

2. 제안이유 : 종로구 행촌동 1-31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를 해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.
3. 주요요지
 ○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(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)

위 치	용 도 지 역			비 고
	변경전	변경후	면적(m ²)	
종로구 행촌동 1-31번지 일대(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)	일반주거지역	제1종 일반주거지역	4,523.1	자연경관지구 해제지역

○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(자연경관지구 해제)

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 치	용 도 지 구(m ²)			비고
			변경전	변경후	면 적	
경관지구	자연경관지구 (인왕지구)	종로구 행촌동 1-31번지일대 (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)	756,449	751,825.9	(감) 4,523.1	

4. 주민의견청취결과 : 의견없음
 5.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견 : 이견없음
 6. 검토의견(전문위원)
 ○ 본 안건은 종로구 행촌동 1-31번지일대 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내 자연경관지구 4,523.1m²를 해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
 ○ 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는 '92.3.12일 58,034m²가 지정되어 다가구, 다세대, 연립주택 등 현지개발 방식(자력개발)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
 ○ 동지역은 '98.9.19 시장과의 데이트시 자연경관지구의 해제는 어려우나 인접 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 사업을 시행토록 검토되어 '99.6.11 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추가 편입된 지역으로 '99.6.17 건축허가 제한으로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니 우선 행촌동 171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 12,120m²를 우선 해제하여 달라는 종로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'99.11.15 자연경관지구를 해제,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금번 추가편입지역에 대하여 자연경관지구를 해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
 ○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재산권 보호측

면에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자연경관지구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지역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해제대상지 동측 및 남측의 주거환경개선지구 구역 외의 지역도 자연경관지구의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.

7. 심사결과 : 수정의견 제시
 ○ 자연경관지구의 효율적관리 측면에서 동측 및 남측의 주거환경개선지구 구역외의 자투리 형태의 지역도 경관지구 해제지역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.

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	67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8.24
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건명 : 지하철 분당선, 7호선 정거장 등 변경결정
 2. 입안내용 : 도시계획시설(철도 : 도시철도) 변경결정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구분	시설의세분	세부시설명	위 치	규 모(m ²)	비 고
변경	도시철도	분당선본선	왕십리역~ 장지동 596-21	B=11~23m L=16,642m	• 도곡정거장 규모변경에 따른 인접 본선 선형조정 (A=46m ² 감소)
"	"	선릉정거장	강남구 역삼동 305-2	A=8,839 →9,083 (증 244)	• 분당선 단계별 건설에 따라 시·중차역으로 변경됨에 따 른 규모 변경
"	"	영동정거장	강남구 대치동 1011-81	A=5,040 →8,425 (증 3,385)	• 출입구 확대설치(4→8개소) 및 연결통로 설치에 따른 규모 변경
"	"	도곡정거장	강남구 도곡동 466-4	A=5,118 →5,353 (증 235)	•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및 공 조환기구 추가설치에 따른 규모 변경
"	"	개포1정거장	강남구 개포동 175	A=8,855 →9,288 (증 433)	• 출입구와 환기구 위치 조정 에 따른 규모 변경
"	"	개포2정거장	강남구 개포동 181-2	A=7,388 →8,749 (증 1,361)	• 정거장본체 일부 및 출입구 2개소 위치확정에 따른 규모 변경
"	"	개포3정거장	강남구 일원동 700	A=7,985 →8,241 (증 256)	• 환기구, 장비반입구 등 위치 조정에 따른 규모 변경
"	"	본선환기구	강남구 도곡동 527	A=285	• 본선 환기구 설치위치 확정 에 따른 변경
"	"	본선환기구	강남구 수서동 734	A=333	• 본선 환기구 설치위치 확정 에 따른 변경
"	"	보라매정거장 (7호선)	영등포구 신길동 508	A=8,307 →8,317.6 (증 10.6)	• 출입구 설치로 인한 보도폭 확보(사유지 편입)

3. 입안사유

○ 지하철 분당선 및 7호선 건설구간의 민원
해소를 위한 출입구 확대설치와 장애인용
엘리베이터 추가설치 등을 위한 정거장 규
모 확장 및 본선 환기구 설치위치 확정
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철도)을 변경 결정하고
자 함.

4. 추진경위

○ 2000. 8.10~8.24 : 도시계획(안) 공람공고
*저축토지구 23인 개별 통지
○ 공람공고시 제출 의견 및 처리계획 : 없음

5. 참고사항

○ 도시계획상임기획단 : 의견 없음
○ 지하철 분당선 완료 예정 시기 : 2001년 6월

도시계획 용도지역·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	718	제출년월일 : 2000.10.23	제 출 자 : 서울특별시
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1. 안 건 명 : 도시계획용도지역(일반주거지역)
및 지구(경관지구)변경결정

2. 입안내용

○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(제1종일반주거지역

지정)						
위 치		용 도 지 역			비 고	
		변경전	변경후	면적(m ²)		
종로구 행촌동 1-31번지 일대(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)		일반주거지역	제1종 일반주거지역	4,523.1	자연경관지구 해제지역	
○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(자연경관지구 해제)						
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 치	용 도 지 구(m ²)			비고
			변경전	변경후	면 적	
경관지구	자연경관지구 (인왕지구)	종로구 행촌동 1-31번지 일대 (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)	756,449	751,825.9	(감) 4,523.1	
<p>3. 입안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지역은 '99.6.11 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역으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함. <p>4. 도시계획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주거지역, 자연경관지구, 일반미관지구 <p>5. 도시계획(안)에 대한 의견청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민의견청취 : 의견없음 ○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: 원안동의 ○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 : 이견없음 						